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28. 양순임 의원 외 16인 (의안번호 454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조례 제명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6조)

-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 사용료 감면규정(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까지 조례를 적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사업대상자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현 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제5조, 안 제7조 일괄 정비

조례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일괄 정비
하고 “구민”을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으로 하는 등 어문을 명확하게 정비
한 것임.

○ 안 제2조(정의) 정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임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정의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 록한 본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 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 공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 공자 본인

○ 안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신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시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우선주차구역 운영을 위한 이용자 관리 규정을 둔.

○ 안 제8조(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시설물을 사용(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조문이나 현행 “시설물 감면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용료 감면규정”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여 시설물 이용시 감면의 대상이 사용료임을 명확히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시설물 감면규정) 구청장은 성북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규정)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삭 제>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위법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28. 이인순 의원 외 13인 (의안번호 455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보육실태조사¹⁾’에 의하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고,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이용자 에 대한 보육교사 보호조치 시행(38.0%), 근무환경 개선(28.1%), 이용자(부모) 대상 보육교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15.6%), 보육교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4.0%)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사됨
- 또한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의뢰, 육아정책연구소 수행)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실태조사)

- 구청장은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일관된 정책이 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성북구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정함

○ 안 제8조(지원사업),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권익보호 관련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법률상담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28. 이인순 의원 외 12인 (의안번호 456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예방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4조)
- 전문가 등 자문 및 예산의 지원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성북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5. 1.20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이 47.3%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불법도박에 청소년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도박 경험도 점차 저연령화('18년 12.6세→'22년 11.3세)²⁾추세이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큼
- 이에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방안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여 우리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2) 출처, '22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문화체육부 소속)

- 성북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 사람으로 하는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안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 청소년이 도박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안 제5조(전문가 등 자문)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예산의 지원),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박 중독예방 교육을 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됨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감위,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

< 2025년 핵심 목표 >

-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 **52,000건** 이상(전년 대비 '25년 5% 이상 증가)
- 청소년 예방 교육 인원 : 연간 **145만명** 이상(3년 평균 대비 8.6% 이상 증가)
- 문제도박자 상담 인원 : 연간 **30,000명** 이상(전년 대비 32.2% 이상 증가)
- 실명 구매율 : **50%** 이상(전년 47.1%에서 '25년 2.9% 이상 증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제18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불법도박 없는 사회 조성 및 건전한 사행산업의 발전> 중장기 비전과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하는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을 국민과 함께 근절한다.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103조 원('22년 기준)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첫째, 사감위는 '24년 50,439건의 불법 온라인도박을 감시하였다. 이는 '22년 26,957건, '23년 48,350건 대비 각각 87%, 4.3% 증가한 수치이다. 불법도박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임에 따라 '25년 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기에,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 진행한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박 계좌를 수집·분석 및 감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그 자금을 차단하는데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협력한다.

둘째, 제2의 '바다이야기'가 야기되지 않도록 홀덤펑 불법행위에 대한 작년 집중 신고와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23년보다 12.1%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올해에도 홀덤펑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국민 신고 참여를 촉진한다.

셋째,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과 홀덤펑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서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채널과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지방분소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추가 마련한다.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기자단 운영, 대국민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누리집 <https://singo.ngcc.go.kr> ♣전화번호
1855-0112

②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경찰청 '24년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가 밝혀져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불법도박에 청소년의 유입이 가속화되어 도박 경험 또한 점차 저연령화 추세('18년 12.6세 → '22년 11.3세 / '22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예방치유원)이다. 또한, 도박 자금 마련, 도박 빚처럼 청소년 도박으로 미치는 2024년도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가 연간 2조 1,7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첫째,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23년 2,093명 → '24년 4,036명) 및 예방 교육('23년 1,422,300명 → '24년 2,028,317명 실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 확대한다. 전체 초중고 학생 수 5백 13만 2천 명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빠른 대처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청소년 도박문제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처음 개최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서울과 부산, 대전지역까지 확대하여 진행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치유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또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치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청소년 예방 활동단 및 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확대(38개소→46개소)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자가 진단 내용을 탑재하고 군 교관 대상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과 예방콘텐츠를 제공한다.

셋째, 이용자가 폭력, 우울 등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지역센터별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32.2% 확대된 문제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연중 상담하고 치유해 나간다.

도박상담 치유센터 ♣누리집 <https://www.kcgp.or.kr> ♣헬프라인 1336

③ 사행산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건전한 역할과 인식을 제고한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국인 출입 제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금년 실시하는「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 ▲도박으로 인한 피해, ▲신종 불법도박 유형 및 특징, ▲시계열 분석(경향성 변화 등)을 포함해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의 실체와 문제를 조사한다. 또한, ‘불법도박 및 청소년 온라인 도박 근절’ 등을 주제로 <사행산업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행산업감독기구연합(IAGR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aming Regulators, 2011년 발족) 등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사행산업 이슈를 공유한다. 향후 세계 각국의 사행산업 규제 기관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사행산업 정책 포럼>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도모한다. 건전화 평가 방식을 변화한다. 업종 사업자 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작년 대비 실명 구매율 목표와 실적, 온라인 발매 및 영업 여건 변화, 구매 상한 준수율을 고려하여 경주류 종목은 '25년 실명 구매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한다. 사업장에서 이용자 구매 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계도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출입일 수를 정기 점검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조사 분석을 강화하여 과몰입·유병률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2024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만 20세 이상 일반인 15,000명, 사행산업 이용객 4,000명 대상)에 따르면, 일반인 유병률 5.1%와 이용객 유병률 32.6%로 '22년 대비 각각 0.4%, 3.2% 하락하였다. 사감위는 일반 국민과 사행산업 이용객의 유병률 완화 노력을 적극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도박 실태파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문화 조성하여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 시설에서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총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장	신종필 (02-3704-051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강경철 (02-3704-0511) 하수현 (02-3704-0517)
<청소년>	예방치유과	책임자	과장	최병세 (02-3704-0570)
		담당자	서기관	윤경미 (02-3704-0571)
<사행산업>	감독지도과	책임자	과장	이수일 (02-3704-0530)
		담당자	사무관	이유니 (02-3704-0531)
<홍보>	조사홍보과	책임자	과장	이선희 (02-3704-0550)
		담당자	사무관	한상철 (02-3704-0554)
<불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책임자	센터장	권영아 (02-3704-054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28. 김경이 의원 외 10인 (의안번호 457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의 고립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7조 및 제8조)
-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하는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3. 4.18 개정 및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³⁾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생활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 2025. 3.25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8.6%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들 중 72.3%는 18세 이하의 청소년기부터 고립·은둔 상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립·은둔 문제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2023. 4. 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또한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한 고립·은둔 청소년이 71.7%에 달해 회복 의지를 지닌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

- 연구기간 : '24.1월~10월 / * 온라인 웹조사 6.11~8.31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대상 : 전국 9~24세 청소년 19,160명
- 방식내용 : 온라인 링크(URL, QR 코드)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
- 조사결과
 -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 : 전체의 28.6% (은둔상태 12.6% 고립상태 16.0%)
 - 초고위험군: '방에서도 안 나온다고 응답한 청소년 2.1%
 - 고립·은둔 시작 시기 : 18세이하 72.3%
 - 9세미만(5.0%), 9~12세 12.0%, 13~15세 25.6%, 16~18세이하 29.7%, 19~24세 27.7%
 - 주요원인 : 친구등 대인관계어려움(65.5%), 공부 학업관련 어려움(48.1%), 가족관계 어려움(34.3%), 따돌림등 폭력경험 (24.7%)
 - 삶의 만족도(10점만점기준) : 고립·은둔 청소년 4.76점, 일반 청소년 7.35점
 - 재고립·은둔 경험 : 39.7% (처음인 경우 60.3%)
 - 자살 생각 경험 : 고립·은둔 청소년의 62.5%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음
 - 회복 의지 : 고립·은둔 청소년의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
 - 필요한 도움 : 눈치보지않고 들러서 머물수 있는 공간 79.5% 경제적 지원 77.7% 혼자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지원 77.7% 진로활동지원 75.1%

<출처> 2025.3.25.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포 보도자료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실태조사)

-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을 실태조사하여 지원 시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지원대상), 안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방 및 발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적 연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둠

○ 안 제9조(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대상자를 발굴하여 조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단체, 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 우리 구의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28. 정해숙 의원 외 18인 (의안번호 458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등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 지원 중단, 환수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비밀누설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성북구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4), 「모자보건법」 제11조5)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
-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4. 2. 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고령 출산화, 늦어지는 혼인 연령 등 사회환경 변화와 저출산으로 난임 시술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우리구 난임 시술 건수도 최근 3년간 129%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 성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대비 증가율
계	930	1,343	2,130	증 129%
체외수정	747	1,095	1,800	증 141%
인공수정	183	248	330	증 80.3%

- 전국 유·사산 발생 현황⁶⁾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출생아수 대비 유·사산아 비율이 34.1%로 증가하였고, 작년 통계자료⁷⁾에서는 35세이상 고위험 산모비율이 36.3%로 10년전(20.2%)보다 크게 증가하여 고령화 등에 따른 유·사산 임신부의 건강보호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북구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6) 2024.10.21. 한국일보 기사 발췌

7) 통계청,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 연령은 2024년 만 33.0세로 2013년 30.7세보다 2.3세 상승함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나이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4년 36.3%로 10년 전 (20.2%)보다 크게 확대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 추진을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안 제5조(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 부부를 지원대상 으로 하고 지원기준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함.

○ 안 제7조(지원사업)

-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과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

○ 안 제8조(지원 중단), 안 제9조(환수)

- 전출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한 방법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환수 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초혼이 늦어지고 산모의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난임의 고통을 겪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 유산 또는 사산의 아픔을 겪는 부부가 34%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이 난임, 유

산·사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위법을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 없이 타당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43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가 2024. 2. 6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에 따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안 제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7. ~ 2025. 3. 19.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2024. 2. 6자로 일부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정의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법률안 개정 취지에 따르면 ‘고독사’의 경우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속에 홀로 사망한 뒤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 전 고독사 정의에는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죽음의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이에 ‘시신 발견 시점’의 요건을 삭제하여 ‘임종사’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개정한 상위법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2. 6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을 말한다.<개정 2023.6.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2024. 2. 6.>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정비

고독사 정의 시점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때’에서

‘임종시’로 변경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을 말한다.	2. ----- ----- ----- 임종하는 것 -----.

다. 종합의견

본 개정안은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어야 고독사로 인정되었던 현행 조례상 ‘일정한 시간의 경과’라는 불명확한 시신 발견 시점요건을 삭제하여 ‘임종시’로 명확하게 개정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44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5.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 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정릉실버 복지센터	솔샘로 8 (정릉동)	813㎡	지1층~3층	2010.2.1.
삼선실버 복지센터	삼선교로18길 41 (삼선동)	542㎡	1~4층	2019.6.21.
성북50+센터	지봉로24길 26 (보문동)	1,072㎡	3,4층	2019.2.12.

※ 정릉실버복지센터 :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위탁 포함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12.31.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시설명	위탁사무
정릉실버 복지센터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시설물 관리 사항(건물, 물품 장비 등)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삼선실버 복지센터	
성북 50+센터	- 중장년층의 제2인생 재설계 교육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기타 중장년층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정릉실버복지센터 :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위탁사무 포함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의 운영사무를 재위탁(공개모집)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8)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m ²)	종사자수 (월이용인원)	위탁법인 위탁기간	‘25년 사업비 (천원)
정릉실버복지센터	솔샘로 8(정릉동)	813 (지1층/3층)	13명 (1,971명)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381,078
				‘21.1.1.~’25.12.31.	
삼선실버복지센터	삼선교로18길 41(삼선동)	542m ² (1~4층)	4명 (2,786명)	사단법인 다원문화	348,062
				‘21.1.1.~’25.12.31.	
성북50+센터	지봉로24길 26(보문동)	1,072m ² (3, 4층)	8명 (694명)	사회복지법인 위드-캔 복지재단	710,000
				‘21.1.1.~’25.12.31.	

※ 정릉실버복지센터 :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포함

나. 주요내용

- 재위탁 대상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는 위탁기간이 2025.12.31자로 만료되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9)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이며,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15).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정릉실버복지센터(정릉데이케어센터 포함) 외 2개소는 「노인복지법」 제31조10)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설의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11)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12) 및 제21조의213)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5년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정릉실버복지센터(정릉데이케어센터 포함) 외 2개소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10)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45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에 따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관련 사항 개정
-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13. ~ 2025. 3. 1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2023.11.22.개정하여 2024.11.23.시행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¹⁴⁾에서, “보건소에서 동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조례 위임한 사항으로,

○ 관련 법규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개정 사항을 조문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2024. 10. 31.일부개정하여, 별표 수수료 중 ‘식품안전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를 ‘3,000원’으로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정비

현행 조례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5조¹⁵⁾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었으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를 추가하여 관련 법률을 명확하게 명시함

14)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15)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항 제1호 정비

진단서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를 포함함을 추가하여 정비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생 략)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②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진단서 및 제증명		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제증명

○ 별표 제1호의 비고란 정비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함을 참고하도록 정비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제2항 관련)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진단서 및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 「식품위 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 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나.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다.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라.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마. <u>창별 및 연령감정서</u>	1통	2,000원	
	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사.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아.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자. 혈액진단서 또는 확인서	1통	1,500원	
	차. 의료기록(X-선 필름 <u>사본발급</u>)	1장	3,100원	
	카. <u>기 발급 증명서의 재발급</u>	1통	300원	
				(14원세14원세)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관련 법규를 명시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46호)
- 나. 회부일자: 2025. 4.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정부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삭제하고,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으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정의에 대하여 정비 및 삭제(안 제2조)
- “학생 치과주치의” 삭제 및 “의료”를 “치과치료”로 변경(안 제1조, 제3조~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내용 정비 및 추가(안 제7조~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7. ~ 2025. 3. 19.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주된 사업이 사업종료 및 사업명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2024. 7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를 지원하던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종료되었고, 저소득층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전환된 정부 사업과 사업명이 유사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종료사업> 2024. 7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종료(초등 4학년 대상)

※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초등 1, 2, 4, 5학년으로 확대)

<변경사업>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 서울시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저소득층 18세미만 아동)

※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명 변경

- 이에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사업명, 사업내용 등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현행화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2024. 7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종료되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 의료”를 삭제하고 “치과치료”로 변경하여 정비함

(현 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정비

목적에 사업종료 대상인 “학생”을 삭제하고 “의료 지원사업”을 “치과치료 지원사업”으로 정비하고, 정의에 사업 종료된 “치과주치의”,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삭제하고 “치과치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정비

사업 종료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삭제하고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인 “의료”를 “치과치료”로 일괄 정비

○ 안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정비 및 신설

협의체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비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고, 회의 개의 및 의결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안 제8조(위원의 해촉), 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파·회피), 안 제10조(회의록) 신설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신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의 주된 사업이 사업 종료되고 사업명이 변경되는 등 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사업명, 사업내용 등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2장에 규정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삭제하고 제3장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사업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여 현재 총 5장 15개 조문, 2개의 부칙조항으로 되어 있던 조문 체계를 간결히 정비하고자 장을 삭제하여 총 15개 조문과 2개의 부칙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없이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현행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 및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 완화
- (개요) 아동이 주치의를 사업기간 동안 학기*마다 정기방문하여 구강검진, 교육 및 예방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받는 구강건강관리제도
 - *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다만, '24년도 1학기는 7월~8월로 함
-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 (2년 8개월)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 (대상아동)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신규 참여

* '24년 초등 1·4학년 ▶'25년 초등 1·2·4·5학년 ▶'26년 초등 전 학년

- (주치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 (서비스내용) 구강위생검사(PHP) 후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실시(필수)/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선택))



- (본인부담금) 1회 당 4,721원 (47,210원 중 아동부담 10%*, 공단부담 90%)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감면

구강건강관리료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별도 산정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47호)

나. 회부일자: 2025. 4.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4. 1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임신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 보호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 대상,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7. ~ 2025. 3. 19.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임신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백일해(법정감염병 제2급)**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및 재채기 시 비말을 통해 전파됨. 콧물, 가벼운 기침 등이 1~2주간 지속되다가 이후 발작성 기침(2~6주)이 지속됨.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 실시(총 6회 접종)

* (소아) 생후 2, 4, 6, 15~18개월, 4~6세 DTaP 접종 후 11~12세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¹⁶⁾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백신 18종)을 규정하여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중 ‘백일해’는 생후 2개월부터 12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 2024.11.12.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백일해가 전국적인 유행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국내 첫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생후 첫 접종(2개월)이전 영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2023. 3. 28., 2023. 6. 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전국, 최근 10년('15~'24년) 백일해 (의사)환자 발생 현황 】

* 단위: 명

년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27명)
총 환자(명)	205	129	318	980	496	123	21	31	292	30,332

※ 출처 2024.11.12.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이에, 감염시 중증 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1세미만 영아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임신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3호 '백일해' 추가

성북구청장이 질병예방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사업에 제3호를 신설하여 '백일해'를 추가함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신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안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제3호 신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임신 27주이상 36주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와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로 규정함. 이는 질병관리청 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2023. 6)>을 반영한 사항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 ① -----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③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 ② ③ (현행과 같음)
--	---

○ 안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제3호 신설

제3호를 신설하여 백일해를 임신시마다 1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원 횟수를 명확히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2. (생략) <신설>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 -----. 1. 2. (현행과 같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작년 백일해의 전국적인 유행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첫 사망자 발생으로 임신부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국가예방접종 첫 접종 이전(2개월)의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약 37백만원)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없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구분	내용
정 의	백일해균(<i>Bordetella pertussis</i>)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법정감염병(제2급) · 국내에서는 DTaP 백신의 도입으로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환자 발생이 2001년 이후 연간 20명 내외 수준이었으나, 2009년(66명), 2011년(97명), 2012년(전남지역 유행, 230명)과 같이 소규모 유행은 지속됨.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성인에서 백일해의 재유행이 있어 주의 필요 · 선진국에서도 2~5년 주기로 백일해 돌발유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백일해가 모든 연령에서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음
병 원 체	· 백일해균(<i>Bordetella pertussis</i>): 그람음성 coccobacilli 균
감염경로	·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 전염성이 강함
잠 복 기	· 4~21일(평균 7~10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발열은 심하지 않음) · 카타르기(catarrhal stage) -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이 1~2주간 나타남. 백일해균의 증식이 가장 왕성하여 전염성이 제일 높은 시기 · 발작기(paroxysmal stage) - 발작성 기침 있으며, whooping cough, 기침 후 구토, 무호흡 등 증상이 나타남 - 최근 확진환자들은 전형적인 백일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벼운 기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음 · 회복기(convalescent stage) - 발작성 기침의 횟수나 정도가 호전 -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고 2~3주 후 기침은 소실되지만 비발작성 기침은 수주간 지속될 수 있음
진 단	· 검체(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에서 <i>B. pertussis</i> 분리 동정 · 검체(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료	· 항생제 치료: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나 주로 이차적인 전파 억제 목적 - 부작용: 1개월 미만 영아에서는 macrolide 계열 항생제(특히 erythromycin) 사용과 비대날문협착증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어 치료 시작부터 치료 종료 1개월 후까지 비대날문협착증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함을 부모에게 교육 필요
환자관리	· 환자 격리: 비말격리, 항생제 치료기간 5일까지 격리,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격리 · 접촉자 관리: 예방적 항생제 투여, 증상 발생 모니터링
예 방	· 예방접종 - (소아) 생후 2, 4, 6, 15~18개월, 만4~6세에 DTaP 백신으로 접종 후 만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 이후 Td 또는 Tdap 백신으로 매 10년마다 추가접종 실시 - (성인) 과거접종력이 없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6~12개월 후에 Td 또는 Tdap 백신으로 총 3회 접종(3회 중 1회는 Tdap 백신 사용) * 연령, 예방접종력에 따라 접종일정 상이 ※ Tdap : 파상풍(T), 디프테리아(d),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항원 포함 백신 - Td : 파상풍(T), 디프테리아(d) 항원 포함 백신, 백일해 항원은 없음

※ 2024.11.12.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